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에 따른 다음의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은 제2호를 따른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금액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 사용금액"이라 한다) ≤ 제2호가목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 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40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 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 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60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 저사용금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 의 40 + 제2호라목의 금액 × 100분의 60 + (최저 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80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3)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
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
술관사용분을 제외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
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
한 대중교통이용분

라.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
술관사용분

마.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5)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4)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5)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
술관사용분